

제천시정기시장관리및사용조례증개정조례안

의 안	
번 호	590

제출년월일 : 2000.

제출자 : 제 천 시 장

1. 개정사유 : 행정규제정비 지침에 따라 법령에 근거 없는 불필요한 규제를 정비하고 조례운영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수정 보완하고자 함.

2. 주요골자

- 제1조 목적중 “충청북도 정기시장시설기준 및 운영관리규칙 제10조” 삭제
- 제2조제1항중 계절시장은 허가 대상에서 제척되었으므로 단서를 삭제
- 제6조 제2항 단서중 “사용자의 주소변경은 제10조의 규정에 따른다”를 “사용자의 주소변경은 제8조의 규정에 따른다”로 수정
- 제11조제2호 및 제3호 내용은 불필요한 규제이므로 제11조제2호의 “사용료를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때”를 “제7조의 규정을 위반하였을 때”로 개정하고 제3호 “시장의 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할때”를 삭제
- 제12조 보험가입을 위해 “필요시 사용자로부터 보험료를 징수하여 시장이 일괄하여 보험에 가입하게 할 수 있다”를 “시장은 사용자로 하여금 화재보험에 가입하게 할 수 있다.”로 수정
- 제13조 제3항 3호는 과세표준액 적용이 불필요하므로 삭제
- 제16조 “사용료의 환급” 단서중 “제13조제3호”를 “제11조”로 수정 보완

3. 관계법령 : 유통산업발전법 제16조

붙임 : 제천시정기시장관리및사용조례증개정조례안

제천시정기시장관리및사용조례증개정조례안

제천시정기시장관리및사용조례증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조 본문중 “및 충청북도정기시장시설기준 및 운영관리규칙 제10조”를 삭제한다.

제2조제1항 단서 및 제2항단서를 삭제한다.

제6조제2항의 후단 단서 중 “제10조의”를 “제8조의”로 한다.

제11조제2호를 다음과 같이하고, 동조제3호를 삭제한다.

2. 제7조의 규정을 위반하였을 때

제1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제12조(보험가입) ①시장은 사용자로 하여금 화재보험에 가입하게 할 수 있다.

②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사용자로 하여금 시장을 보험금의 수취인으로 하는 화재보험에 가입하게 할 수 있다.

제13조제3항제3호를 삭제한다.

제16조 본문중 “제13조제3호의”를 “제11조의”로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 대비표

<p>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유통산업발전법(이하 "법"이라 한다) 제16조 및 충청북도정기시장 시설기준 및 운영관리규칙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기시장(이하 "시장"이라 한다)의 설치 및 사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</p> <p>제2조(정기시장의 시설기준 등) (생략)</p> <p>① 대지가 1천제곱미터 이상이어야 한다. <u>다만, 계절적으로 개설되는 정기시장(이하 "계절시장"이라 한다)의 경우에는 350제곱미터 이상이어야 한다.</u></p> <p>② 급수시설, 배수시설, 위생시설(화장실등) 기타 필요한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. 다만, 계절시장의 경우는 제외한다.</p> <p>제3조 ~ 제5조 (생 략)</p> <p>제6조(사용허가) ①(생 략)</p> <p>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기시장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허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. 다만 사용자의 주소 변경은 제10조의 규정에 따른다</p> <p>제7조 ~ 제10조 (생 략)</p> <p>제11조(허가의 취소 등) 사용자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시장은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사용을 정지할 수 있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(생 략) 2. <u>사용료를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때</u> 3. <u>시장의 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</u> 	<p>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유통산업발전법(이하 "법"이라 한다) 제16조<삭제>의 규정에 의하여 경기시장(이하 "시장"이라 한다)의 설치 및 사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</p> <p>제2조(정기시장의 시설기준 등) (현행과 같음)</p> <p>① 대지가 1천제곱미터 이상이어야 한다. <u><삭제></u></p> <p>② 급수시설, 배수시설, 위생시설(화장실등) 기타 필요한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. <삭제></p> <p>제3조 ~ 제5조 (현행과 같음)</p> <p>제6조(사용허가) ①(현행과 같음)</p> <p>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기시장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허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. 다만 사용자의 주소 변경은 제8조의 규정에 따른다</p> <p>제7조 ~ 제10조 (현행과 같음)</p> <p>제11조(허가의 취소 등) 사용자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시장은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사용을 정지할 수 있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(현행과 같음) 2. <u>제7조의 규정을 위반하였을 때</u> 3. <삭제>
--	---

<p><u>제12조(보험가입) ①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사용자로 하여금 시장을 보험금의 수취인으로 하는 화재보험에 가입하게 할 수 있다.</u></p>	<p><u>제12조(보험가입) ① 시장은 사용자로 하여금 화재보험에 가입하게 할 수 있다.</u></p>
<p><u>② 시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사용자로부터 보험료를 징수하여 시장이 일괄하여 보험에 가입 할 수 있다.</u></p>	<p><u>②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사용자로 하여금 시장을 보험금의 수취인으로 하는 화재보험에 가입하게 할 수 있다.</u></p>
<p><u>제13조(사용료 징수) ①(생략) ②(생략) ③(생략) 1.(생략) 2.(생략) 3.<u>한개의 첨포가 둘 이상의 과세산출표준액에 해당될 때에는 높은 금액을 적용하여 산출한다.</u></u></p>	<p><u>제13조(사용료 징수) ①(현행과 같음) ②(현행과 같음) ③(현행과 같음) 1.(현행과 같음) 2.(현행과 같음) 3.<삭제></u></p>
<p><u>제14조 ~ 제15조(생략)</u></p>	<p><u>제14조 ~ 제15조 (현행과 같음)</u></p>
<p><u>제16조(사용료의 환급) 이미 납부한 사용료는 이를 환급하지 아니한다. 다만 제13조제3호의 규정에 따라 사용허가를 취소한 때에는 당월 15일이전에 속하는 것은 전액을, 16일이후의 취소에 속한 것은 반액에 상당한 사용료를 사용자에게 환급할 수 있다.</u></p>	<p><u>제16조(사용료의 환급) 이미 납부한 사용료는 이를 환급하지 아니한다. 다만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사용허가를 취소한 때에는 당월 15일이전에 속하는 것은 전액을, 16일이후의 취소에 속한 것은 반액에 상당한 사용료를 사용자에게 환급할 수 있다.</u></p>
<p><u>제17조 ~ 제18조(생 략)</u></p>	<p><u>제17조 ~ 제18조(현행과 같음)</u></p>